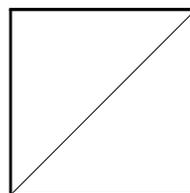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77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9. 1. (제 16 차)

의  
결  
사  
항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9. 1.

## 1. 의결주문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3. 검사결과 지적사항

### 가.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면제

### 나.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면제

### 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대표이사 ●●●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2021.7.22.) 심의필

<별지>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 과태료 114.4백만원 부과 면제

- 조치사유

-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제1항, 제418조(보고사항)제5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0호 및 제3항제1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제1항제1호가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3>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대표이사 ●●●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2항제2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3>

## 2. 조치사유

### 가.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 「자본시장법」 제419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됨에도
-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은 'xx.x.xx. 검사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주)·□□□□(주)·○○○○○○○○(주)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xx건을 임의로 위조하여 검사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xx.x월말경 금감원 검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은폐하고자 임직원 x명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舊PC와 일부 서류들을 옵티머스자산운용(주)과 동일 건물(□□□□ □□□□)에 소재한 별도 사무공간에 은닉하였으며

'xx.x.xx. 옵티머스자산운용(주) 창고에 있던 PC 및 일부 서류들을 □□□□ 소재 외부창고에 은닉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

### 나.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주요주주가 변경되거나 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은 'xx.x.xx. ●●●이 동 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xx.x.xx. 동 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xx,xxx주(지분을 x.x%)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요주주 변경사실 및 대주주 소유주식의 변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 등을 매매한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옵티머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은 'xx.x.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KOSPI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매매(기간 중 최대투자원금 : 약 xx억원, 기간 중 매매일수 : xxx일) 하였음에도 소속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 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9. (생략)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 49.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8. (생략)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10. (생략)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2. 제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제371조(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2017.10.19. 개정된 現 시행령)**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차. 법인인 자가 법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법 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0호	10,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카.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법 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0호	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려. 법 제418조(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 제19호	1,800

### 【 금융투자업 규정 】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①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가. 법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0호를 제외함)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

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699